

공정거래 자율준수

CP운영지침서

문서번호	SJENI-CP-200
제정일자	'24. 01. 15
개정일자	24. 06. 27
개정번호	2
페이지	1 OF 11

본 CP운영지침서는 2024. 01. 15 (Rev. 0)부로 개정 함.

작성, 검토 및 승인					
1. 제 목	공정거래 자율준수 CP운영지침서				
2. 발행일자	2024년 1월 15일	개정번호	2		
3. 개정사유	수정 및 항목 추가				
3. 작 성	부 서 명	품질혁신부			
	구 분	직 위	이 름	서 명	일 자
	작성	차장	정송모		
	검토	상무이사	채양준		
4. 관련부서 검 토					
5. 승 인	대표이사	박흥원			

개정 이력

개정번호	항목번호	개정 전 내용	개정일자	개정부서	비고
		개정 후 내용			
0	전면	최초작성	'24.01.15		
		해당없음			
1	제12조 2항	해당없음	'24.02.20	CP운영팀	6page
		제12조 2항 6번 신설 항목 추가			
2	제7조	해당없음	'24.06.27	CP운영팀	4Page
		3,4항 수정 및 5,6항 추가			

규정(안) 본문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규정>

제 1장 일반원칙

제 1조(목적)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규정(이하 'CP규정'이라 한다)은 기업소속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통해 기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과 임직원을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기본 원칙) CP규정은 기업 임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관련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 본 규정에 반하는 기업의 방침 또는 규정이 있을 경우 CP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제 3조(용어 정의) CP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란 "Compliance Program"의 약자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 CP는 CP의 취지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의한 시스템을 뜻한다.
3. 자율준수는 임직원이 CP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4.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고시, 지침을 의미한다.
5. 최고의사결정기구(이하 '이사회')는 회사의 이사회에 해당한다.
6. 자율준수관리자는 기업의 CP 운영을 총괄하는 임원으로, 최고경영자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임명한다.
7. 자율준수부서장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CP 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는 자를 뜻한다.
8. 공정거래 담당은 CP 운영 실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해당한다.
9. 위험관리 부서는 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로서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한 부서를 뜻한다.
10. 임직원은 고용 형태나 종류와 무관하게 기업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뜻한다.
11. 제재 조치는 임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CP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로서, 징계의 절차 및 종류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에서 정한다.
12. 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 담당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판단한 행위로서, 행정기관, 사법기관, 기타 제3자에 의한 문제 제기 및 판단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 담당이 직접 검토하여 법 위반 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3. 현장 점검은 위험관리 부서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 업무행위 및 생산 서류를 공정거래 담당 주관하에 점검하고 조사하는 행위를 뜻한다.
14. 자율준수편람은 기업 임직원들에게 CP의 이해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등을 위하여 CP 운영 기준, 절차, 사례 등 CP 관련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한 지침서를 뜻한다.
15. 인센티브는 CP를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기업, 고객, 협력사 사이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임직원 또는 부서에 제공하는 혜택을 뜻한다.

규정(안) 본문

제 2장 조직 및 업무

제1절 최고경영자의 의무와 권한

- 제 4조(최고경영자의 의무)** ① 최고경영자는 CP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CP가 기업 운명의 최우선이 되는 정책임을 보장하여야한다.
- ② 최고경영자는 효과적인 CP 운영 및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에게 예산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자율준수 문화의 저해 행위 등 CP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임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 제 5조(최고경영자의 권한)** ① 최고경영자는 CP 운영 관련 최고 의사결정권한을 가진다.
- ②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추천하고 임명하여야 한다.
- ③ 최고경영자는 CP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 지원을 배분할 수 있다.
- ④ 최고경영자는 CP 운영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등

- 제 6조(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① 최고경영자와 이사회는 효과적인 CP 운영을 위해 임원 지위를 가진 자로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지식이 풍부하거나 CP를 포함한 준법경영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경영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위험관리 부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 부서에 소속되어야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를 대신하거나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 다시 추천할 수 있다.

제 7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사권
2. 위 1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및 최고경영자에 독립적 보고
5. CP기획, 운영 및 감독
6. CP평가 · 개선 및 운영현황 보고

규정(안) 본문

제 8조(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CP 운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변경 요구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CP기준과 절차의 대내외 공표
3. 자율준수편람의 제·개정
4. CP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6.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법규 위반 및 CP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사
7. 위 6호에 따라 공정거래 법규 위반이 확인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8. CP 운영 관련 인센티브 제도의 구축 및 대상 임직원 선정
9. CP 관련 효과성 평가 및 다음연도 CP운영계획을 포함한 각종 경영계획안 반영

제 9조(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 10조(공정거래 담당의 업무) ① 공정거래 담당 소속 직원은 제8조 각 호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② 공정거래 담당부서는 제 1항에 따른 업무 추진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월 1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기업의 CP 운영에 중대한 변화나 영향을 끼칠 사안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제3절 임직원의 역할과 의무

제 11조(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협의회의회의 의장의 직을 맡는다.
- ② 자율준수협의회의의 의원은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위험 부서의 장으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가 의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 ③ 자율준수협의회의의 간사는 CP운영팀이 맡는다.
- ④ 자율준수협의회의의 실천리더는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위험 부서의 실무자로 임명한다.

제 12조(자율준수협의회의의 운영과 역할)

- ① 자율준수협의회의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협의회의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정(안) 본문

1.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 하고 필요 조치 권고 및 자문
2.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련 부서간의 업무 갈등 조정
3. 각 위원별 담당부서의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실시 및 감독, 그에 따른 결과를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통보
4. 각 위원별 담당부서의 자율점검에 대한 감독
5.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수행 자문
6. CP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사요구와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 여부에 대해 안건 상정을 의결 할 수 있다.

제4절 임직원의 역할과 의무

제 13조(임직원의 의무) CP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및 자율준수편람에 대한 숙지
2. 고객 및 외부 거래처 등에 대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노력
3. 임직원 본인 또는 타인 업무수행 중 확인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한 제보
4.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여한 CP 관련 교육 목표 달성

제 14조(사전업무협의)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수행할 경우 공정거래 담당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동종업계 관계자의 접촉, 계약·구매·입찰사무, 타 계열사와의 거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다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신청 관련 작성과 제출
 2. 위 호 이외에 임직원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의 수행
- ② 임직원은 사전업무협의 시 공정거래 담당에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 공정거래 담당은 임직원이 원하는 경우 사전업무 협의 전 협의 대상 업무 여부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적용 여부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5조(내부고발) ① 임직원은 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였을 경우 이를 공정거래 담당 부서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즉시 제보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제보하지 않거나 같이 행위를 한 경우 법 위반 행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규정(안) 본문

제 3장 CP의 운영 등

제1절 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제 16조(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①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CP 도입 및 운영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최고경영자 본인을 포함한 임직원의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

② 위 1항에 따른 공표 및 의지 천명은 홈페이지를 포함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공표 및 의지천명 대상에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 기타 이해관계자가 모두 포함 되어야 한다.

제2절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교육

제 17조(자율준수편람) ① 공정거래 담당은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위 1항에 따른 배포 시 위험관리 부서를 최우선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 담당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개정 및 변경 소요를 연 1회 이상 검토하여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18조(임직원에 대한 교육)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CP 관련 연간 교육 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하고 자율준수편람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취지 및 목적
2. 교육 대상자 및 부서
3. 교육 전담강사의 지정 및 역할 정의
4. 교육내용 및 교재 활용 방안
5. 교육의 방법(온라인 / 오프라인 교육 구분 등)
6. 교육성과 평가 방법 및 후속조치 방안
7. 연간 교육일정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원을 상대로 한 교육 과정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한 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 및 임원은 CP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교육 시행 후 교육 미 이수자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 법규 등 CP 위반자를 월 주기로 확인하고 위 대상자에 대한 보수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수 및 특별교육실시 공지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대상자의 부서장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인사고과반영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건의 할 수 있다.

규정(안) 본문

-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교육 시행 후 임직원들의 이해수준 등 교육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다음년도 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⑥ CP 관련 교육에 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하고 CP 운영팀이 시행한다.

제3절 내부감시체계

제 19조(내부감시체계) ① 기업은 일상 업무에서 법 위반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내부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조치하기 위한 내부감시체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위험 평가
2. 사전업무협의제도
3. 직접보고체계
4. 내부고발시스템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결과를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조의1(위험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담당 또는 감사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위반 행위 발생 등을 확인을 위한 위험 평가를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차 사전 실태조사: 부서별로 지정된 자가 공정거래 담당이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업무 관련 공정거래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공정거래 담당 부서에 보고
2. 2차 현장 심층조사: 공정거래 담당에서 위 1호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내부 제보를 통하여 확인된 공정거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직접 조사

② 위 1항에 따른 결과 보고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 회차 및 기간
2. 시행의 주체(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 위부 감사, 감사팀)
3. 평가 대상 부서(선정기준 포함)
4. 평가 결과(사업부서별, 임직원별 등)
5. 미비점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 방안

제 19조의2(사전업무협의제도)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공정거래 법규 위반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 업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안) 본문

- ② 공정거래 담당은 위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도 문서 시스템을 통해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메일 등을 활용해 먼저 회신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 담당은 위 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사전업무협의 실적은 반기별 1회 이상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조의3(직접보고체계)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명백한 법 위반 행위(자율준수관리자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유관부서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거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직접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최고경영자는 위 1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9조의4(내부고발시스템)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보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이 포함된 내부고발시스템을 공정거래 담당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라 설치된 내부고발시스템에 제보한 임직원이 타 부서의 보복, 차별, 인사성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 소속 임직원은 제보 사실의 처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제보한 내용이 법 위반 예방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 제17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현황을 연 2회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제재 및 인센티브

제 20조(법위반 행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전보 등 제재 조치를 인사위원회에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이 법 위반 행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공정거래 담당과 사전 협의 없이 업무를 강행한 경우
2.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검찰 고발 및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기업에 손해의 배상 등 금전적 피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위 1호 내지 2호 행위로 인해 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과정에서 위 1항에 따른 행위 이외의 공정거래 법규 위반 행위 또는 CP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로서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임직원의 상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안) 본문

- 제 21조(우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활용을 통한 회사의 법 위반 예방 및 법률 비용 감소에 기여한 임직원 및 CP교육 실적 우수 임직원 등 회사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CP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 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인센티브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격려금 등 포상
 2. 자율준수관리자 상장 수여
 3. 해당년도 인사평가 시 가점
 4. 이 규정 제 19조 제2항에 따른 위반 행위 시 제재 경감 또는 면제
- ③ 기타 인센티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정하고 공정거래 담당이 시행한다.

제5절 효과성 평가 및 경영에의 반영

- 제 22조(CP 운영의 효과성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CP 운영 관련 효과성 평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CP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② CP 효과성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CP 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 및 인식 수준
 2. CP 관련 교육성과
 3. CP 운영팀의 CP 업무 운영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
 4. CP 규정 및 자율준수편람 등 CP 운영 관련 기준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성과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평가와 별개로 효과성 평가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CP등급평가를 신청하여 평가 등급을 취득하거나 외부전문가 집단에 효과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 23조(효과성 평가의 활용 등)**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 제18조에 따른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위 1항에 따른 보고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인사 제재조치, 예산과 조직 운영의 변경, CP규정 개정 추진을 의결하여 최고경영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지 할 수 있으며, 이를 통지받은 최고경영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는 그 통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는 위 2항에 따른 조치 완료 시 그 결과를 회사 소속 임직원에게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규정(안) 본문

- 제 24조(감사)**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적인 CP운영을 위해 공정거래관련 법규 및 필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공정한 감사 활동을 위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며, 감사에 따른 필요 자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③ 피 감사 대상 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관련 문서 및 서류 등을 요청할 시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감사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배경 및 목적
 2. 감사중점 및 대상
 3.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등

제 4장 기 타

- 제 25조(문서관리)** ① 공정거래 담당은 CP 운영에 관한 문서 일체를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분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기업의 전 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CP 관련 자료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1. 부서별 배포된 자율준수편람
 2. 부서별로 체결한 계약서 및 계약 부속서류
 3. 부서별로 외부 거래(업무)당사자와 작성한 합의서, 약정서, 공문 등
 4.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부서가 직접 수신한 문서 일체
- ③ 공정거래 담당은 위 2항에 따른 문서보관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미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미비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 제 26조(권한의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 또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4년 01월 0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4년 0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4년 0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